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21 0168 3514 호

보험계약내용	보 험 계 약 자	590109-1****** 유호
	피 보 험 자	107-83-019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 험 가 입 금 액	金 六百六拾四萬壹阡七百八拾 원整 ₩6,641,780-
	보 험 료	₩135,350- ■ 일시납 □ 분납
	보 험 기 간	2021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3일까지(730 일간)
	보 증 내 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계약변경사항	내 용	1. 보험기간 : 2021/05/14 - 2023/05/13 로 변경 2. 담보기간시작일자 : 2021/05/14 (으)로 변경 3. 담보기간종료일자 : 2023/05/13 (으)로 변경 4. 변경기준일자 : 2021/05/14 끝.
	사 유	기간변경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계약내용이 계약변경사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기타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2021년04월3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유 광 열

증권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한울
		모집자 고유번호	한승희 19950671040020 (02-2632-7964)
	지점	영등포지점	김현정 02-2679-0021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10층 (문래동3가, 영시티N타워)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2104300018507-01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21 0168 3524 호

보험계약내용	보 험 계 약 자	590109-1****** 유호
	피 보 험 자	107-83-019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 험 가 입 금 액	金 壹阡壹百六萬九阡六百貳拾 원整 ₩11,069,620-
	보 험 료	₩563,990- ■ 일시납 □ 분납
	보 험 기 간	2021년 05월 14일부터 2026년 05월 13일까지(1,826 일간)
	보 증 내 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계약변경사항	내 용	1. 보험기간 : 2021/05/14 - 2026/05/13 로 변경 2. 담보기간시작일자 : 2021/05/14 (으)로 변경 3. 담보기간종료일자 : 2026/05/13 (으)로 변경 4. 변경기준일자 : 2021/05/14 끝.
	사 유	기간변경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계약내용이 계약변경사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기타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2021년04월3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유 광 열

증권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한울
		모집자 고유번호	한승희 19950671040020 (02-2632-7964)
	지점	영등포지점	김현정 02-2679-0021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10층 (문래동3가, 영시티N타워)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21043000018655-01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21 0168 3518 호

보험계약내용	보 험 계 약 자	590109-1****** 유호
	피 보 험 자	107-83-019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 험 가 입 금 액	金 壹阡七百七拾壹萬壹阡四百 원整 ₩17,711,400-
	보 험 료	₩541,430- ■ 일시납 □ 분납
	보 험 기 간	2021년 05월 14일부터 2024년 05월 13일까지(1,096 일간)
	보 증 내 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계약변경사항	내 용	1. 보험기간 : 2021/05/14 - 2024/05/13 로 변경 2. 담보기간시작일자 : 2021/05/14 (으)로 변경 3. 담보기간종료일자 : 2024/05/13 (으)로 변경 4. 변경기준일자 : 2021/05/14 끝.
	사 유	기간변경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계약내용이 계약변경사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기타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2021년04월3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유 광 열

증권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한울
		모집자 고유번호	한승희 19950671040020 (02-2632-7964)
	지점	영등포지점	김현정 02-2679-0021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10층 (문래동3가, 영시티N타워)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2104300018579-01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21 0168 3526 호

보험계약내용	보 험 계 약 자	590109-1****** 유호
	피 보 험 자	107-83-019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 험 가 입 금 액	金 八百八拾五萬五阡七百 원整 ₩8,855,700-
	보 험 료	₩902,390- ■ 일시납 □ 분납
	보 험 기 간	2021년 05월 14일부터 2031년 05월 13일까지(3,652 일간)
	보 증 내 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계약변경사항	내 용	1. 보험기간 : 2021/05/14 - 2031/05/13 로 변경 2. 담보기간시작일자 : 2021/05/14 (으)로 변경 3. 담보기간종료일자 : 2031/05/13 (으)로 변경 4. 변경기준일자 : 2021/05/14 끝.
	사 유	기간변경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계약내용이 계약변경사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기타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2021년04월3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유 광 열

증권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한울
		모집자 고유번호	한승희 19950671040020 (02-2632-7964)
	지점	영등포지점	김현정 02-2679-0021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10층 (문래동3가, 영시티N타워)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21043000018620-01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